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91th April 2016

CONTENTS

WHERE IS GRACE CHANG?

Stand Up! Value Up!

COVER STORY

인공지능과 우리 삶의 변화

FTA NEWS

한-미 FTA 발효 4 주년, 이행 현황
및 시사점

VOICES FROM THE FIELDS

반덤핑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II
피해조사 방법(절차)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판례로 알아보는 외환거래 ②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대법원 2007 두 1929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신한 소식

신한관세법인
대구경북지사/창원지사 OPEN

ABOUT

WRITERS



WHERE IS GRACE CHANG?



Stand Up! Value Up!



장승희
 대표 관세사

지난 1 월, 우리는 새해 motto 를 Stand Up! Value Up! 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혼탁해지고, 우리가 속해있는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혼탁해지는 환경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주위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깨끗하게 일어서야 한다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서있어야 할 자리는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기본을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 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아침인사 하는 것, 만원 지하철을 줄 서서 차례대로 타는 것,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친절하게 배려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직장 동료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고객의 전화에 친절하게 응답하는 것, 회의 중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 배려하는 것,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

기본을 지키지 않은 선박에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국민들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로 나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막말과 술수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길이 없다/여기서부터 희망이다/숨막히며/여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으면/길을 만들며 간다/여기서부터 역사이다

(...)

길이 없다/그리하여/길을 만들며 간다

길이 있다/길이 있다/수많은 내일이/완벽하게 오고 있는 길이 있다

- '길' 고은(1933~)

기업이 일어서고 사회의 가치를 높여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한명인 내가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길을 만들며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희망의 길이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사랑의 길이어야 합니다.**

작금의 사회에서 보여지는 무례와 혼란의 길에서는 영영 떠나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약한 자식을 학대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이제 그만 버려야 합니다. 수많은 내일이 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신한관세법인은 또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창원지사와 대구경북지사를 개소**합니다. 고객사 곁으로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을 지키며 고객감동 서비스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인공지능(AI)에 대한 내용입니다. FTA News 는 발효 4 주년이 되는 한-미 FTA 의 이행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반덤핑조사 방법과 피해조사 방법에 대한 고찰 및 외환거래에 대한 판결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나를 대리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본을 지키며 성실하게 투쟁하는 사람이 선출되기 바랍니다. 제발, **품격이 있는, 무례하지 않고 책임 있는 언행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는, 희망의 길을 만들어 가는 정치인이** 선출되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봄 꽃에 취하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Cover
 Story

인공지능과 우리 삶의 변화

2016년 3월, 우리 모두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게 하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세돌 9단을 바둑 대결에서 4대 1로 이긴 사건인데요. 알파고는 인간만이 갖고 있다고 여겼던 판단력, 직감까지 모방한 바둑을 선보이며,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워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계산을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영역으로 평가 받았던 바둑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패한 것은 "향후 인공지능이 머리를 쓰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둑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이러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I. 인공지능의 개념, 종류

인공지능에 대해서 국내 유명 포털의 백과사전에서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산, 집계, 연산 등 자동자료처리의 역할을 넘어서 판단, 학습, 결과 개선이 가능한 컴퓨터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은 크게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약인공지능"은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알파고처럼 어떠한 특정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한편 "강인공지능"은 인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뇌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능을 말하는데, 독자적으로 광범위한 사고와 문제 해결 및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등에서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배경으로 설정되었던 인공지능은 상기의 범주에서 "강인공지능"에 해당하며, 이번 알파고의 경우 바둑에만 능력을 가진 "약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II.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줄 영향

인공지능의 진보와 발전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흐름이 변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개입될 소지가 낮은 분야를 시작으로 점차 어렵고 높은 수준의 판단을 요하는 분야에 이르기 까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회변화는 특정 직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업,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제조업체인 히타치에서는 참고 화물 포장, 적재, 운반과 관련하여 누적된 data 와

최적의 동선을 분석하여 물품을 자동으로 적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무인 자동차 등이 상용화 되면 화물 운반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발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인공지능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감성, 창의성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및 개개인들의 변화와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우리의 국제 무역환경을 극적으로 변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물의 보관, 분배, 이동-운송, 통관에 이르기까지 무인화, 자동화, BIG DATA 활용 등의 화두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알파고의 등장을 계기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주로 귀에 들리고있습니다. 만, 결국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발생할 문제의 시작과

끝에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막연히 두려운 인공지능, 그렇지만 결국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할 인간이 제대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기술로 더 발전될 미래를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참고문헌

인공지능, 불현듯 우리 곁으로... 한국 눈뜨게 한 '알파고 7 일', 2016.03.16. 조선닷컴(조선일보), 박건형기자외 2명 [사설]
이세돌 대 알파고 대국이 인류에 던진 질문, 2016.03.15 경향신문 히타치, 물류작업 효율화에 AI 활용 실증시험 실시, 2016.03.15.(인터넷 연합뉴스), 이해영기자
네이버 지식백과 - 검색어 인공지능, 2016.3.20.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중 호
(jhshin@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미 FTA 발효 4주년, 이행 현황 및 시사점

지난 15 일,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 가 발효 4 주년을 맞이 하였다. 거대시장 확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협상이니만큼 발효 전부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한-미 FTA 는 발효 전 협상만 8 차례가 이루어지는 등의 발효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협정이기도 하다. 이에 한-미 FTA 발효 4 주년을 맞는 현시점, 한-미 FTA 에 대한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FTA 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1. 한-미 FTA 4년, 이행 현황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발효 4주년을 맞은 한-미 FTA는 크게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

①미국시장 점유율 15년만에 최고치 기록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3.31%) 이래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년대비 0.23%p 상승한 3.2%를 기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2.65%p)를 역대 최저치로 좁혔다는 데에서 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②FTA 수혜품목 수출 증가

FTA 수혜품목 즉,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품목은 2015년 수출이 한 해 전 보다 5.1% 증가하였다. 세계 경기 둔화, 저유가의 영향 등 악화된 대외여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 수입증가율이 한 해 사이 11.9%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출을 달성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③對미 수출품목 및 수출회사의 증가

2015년, 전년 대비 對미 수출품목이 115개 증가하는 등 FTA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약 15,000개사의 수출업체가 미국시장 신규진입을 하는 등 2015년 수출 활용률은 71.1%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④한미 교역액 증가 및 미국의 한국투자 증가

한미 교역액이 약 15조원(131억달러) 증가하였고 2015년 대미 무역수지는 258.1억 달러흑자로 전년 대비 8.1억 달러 증가 하였다. 또한 미국의 한국 투자도 2011년 대비 31억 1000만 달러 증가 하였다.

2. 시사점

적극적으로 미국시장을 공략 할 것!

한-미 FTA 관세철폐와 인하여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특히, 대미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 2.5%가 올해부터 철폐됨에 따른 승용차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對미 수출 유망품목으로 한-미 FTA 관세철폐 혜택을 바탕으로 미국의 수입수요

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인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용보일러, 고무형재, 밸브류, 열교환기, 섬유 등을 발표하였다.

TPP 발효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시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 가 발효되면 99%의 관세가 무세화 되는 2030년에는 미발효시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0.3% 감소, 한국수출은 1.0% 가량 감소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PP 가 발효되면 한-미 FTA 로 누리던 비교우위효과 및 FTA 혜택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미국내의 시장 점유율에 있어 일본과의 격차를 사상 최저치로 좁혀 놓은 현시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을 위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우리 정부는 TPP 가 한-미 FTA 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까지 판단하여 특히나 불가피해진 일본과의 경쟁에 있어 비교우위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소 라
(srpark@customsservice.co.kr)

TPP에 따른 비회원국 GDP 및 수출 변화(2030년 기준)



주 : 2017년 TPP 발효 가정, 2030년 TPP 미발효시(baseline) 대비 TPP 발효시의 GDP 및 수출 변화를
자료 : Peter A. Petri and Michael G. Plumme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Estimates"

Voices From The Fields

반덤핑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II 피해조사 방법(절차)

EU의 한국산 경량감열지 반덤핑 조사, EU의 중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등 최근 국제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해 부과하던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기간 연장을 거쳐, 2016년 3월 11일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 4년간 부과(2020년 3월 10일까지)가 확정되었다.

덤핑방지관세는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부과 가능하다. 조금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 지난 호에 언급한 덤핑마진계산방법에 이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피해조사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조사당국은 상대국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조사기간은 특별한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개시 이후 1년 이내에 판정이 내려지며,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조사의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단계	내용	비고
1 단계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서 접수 및 설명	
2 단계	반덤핑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제소자격 평가(제5.4조) ✓ 신청서가 적절히 서류화 되었는지 여부 판단 (제5.2조) ✓ 제공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고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판단 	1(A):공급국 정부에 통지하기 (제 5.5 조)
3 단계	신청서상의 정보가 2 단계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제 12.1 조상 요구되는 공고를 통지하기 (1) 조사 개시 공고 초안 작성 (2) 공급국 정부에 대한 통지를 쟁점화 (3) 조사 개시 공식 통보	
4 단계	조사에 포함할 조사대상물품, 공급자, 조사기간의 명확화	2 단계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음
5 단계	피해 및 인과관계와 관련된 추가 정보원에 대한 확인	
6 단계	조사 시 고려해야 할 특별 쟁점에 대한 확인	
7 단계	특정 산업에 직면해 있는 특수한 경쟁조건에 대한 확인	
8 단계	국내 생산자, 수입자, 외국생산자/수출자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의서 작성 및 발송	

1~3 단계는 공식적 조사개시 이전에 발생하며, 조사신청서에 피해와 인과관계자료가 증거자료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 조사개시 판정을 위해 피해 및 인과관계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지한다. 4~7 단계에서는 조사대상물품, 이해관계자, 기간, 쟁점, 특수 경쟁조건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며, 이러한 절차는 2 단계 이전에 이뤄질 수 있다.

9 단계	제공된 정보의 검토 및 확인을 포함한 답변서 분석 절차	
10 단계	조사보고서 작성	
11 단계	공청회 개최(가능할 경우)	
12 단계	최종 조사보고서 작성	
13 단계	피해 및 인과관계와 관련된 핵심쟁점의 분석 수행	
14 단계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작성과 관보의 발송	

8 단계에서는 조사당국은 피해 및 인과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산업과 참여 기업에 질의서를 발송하며, 질의서는 물품, 국내산업, 수입량, 가격, 국내 산업 상태관련 요인, 미소물량 및 누적, 인과관계, 실질적 피해유려 평가, 산업의 특수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9 단계에서 작성된 질의서 답변을 분석하여, 10 단계에서는 답변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실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능한 경우 11 단계에서 공청회 개최를 통해 반대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제공 및 조사당국이 피해판정과 관련된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질의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덤핑, 피해 그리고 인과성에 대한 최종판정이 긍정적으로 내려지더라도 최종조치를 부과하거나, 전체 덤핑마진 수준만큼 최종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부과 여부 및 덤핑관세금액의 결정은 수입국의 관련당국에서 이루어진다. 잠정 조치 또는 최종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조사당국은 수출자와 가격약속(덤핑가격으로 수출한 지역으로의 수출중단 또는 수출가격의 인상)을 시행할 수 있다. 가격약속이 시행되면, 조사당국은 관련 수출자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거나 유예할 수 있으며, 가격수락위반의 경우 조사가 다시 개시될 수 있다.

12 단계~14 단계에서는 최종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제적 법률 및 경제적 쟁점에 대해 분석한 후, 예비 및 최종판정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관계없이 공고를 회원들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확정관세가 부과되는 최종긍정판정공고는 사실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최종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와 법규를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 보고서를 통해 설명이 되어야 한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는 '적법절차', 즉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그들의 이익 방어를 위해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평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가 증가하는 만큼 조사당국의 조사 및 판정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각국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WTO 반덤핑 가이드북-주디스 차코·요한 휴먼·조르주 미란다 지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차 미 정
(mjcha@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낮춤.

□ 안전관리기준 준수도 측정결과를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의 관리·감독, 과태료·과징금의 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한 화물운송 실적이 있는 화물운송업자를 추가.

2. 주요 개정내용

□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제9조의3 개정)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기존 1천분의 25)

□ 준수도 측정·평가 결과활용(제79조의3 신설)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 보세구역의 관리·감독
3. 과태료·과징금의 산정
4.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62조의2 신설)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시행일자

2016. 3. 9.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병 관

bkpark@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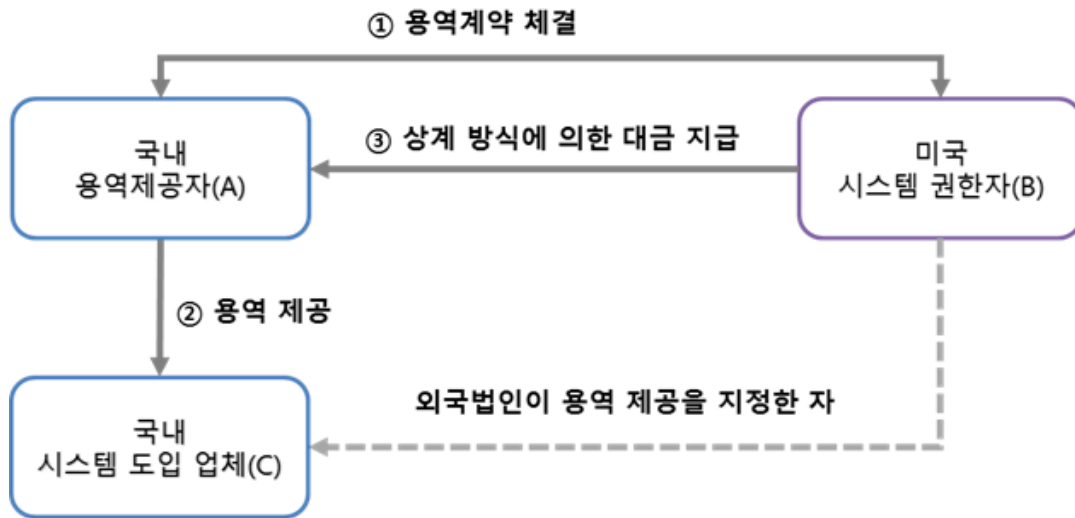
«신한's Opinions»

2014년 12월 신설된 관세법 제255조의2 제7항에 의거하여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로 공인(AEO 공인)받기 위한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의 지원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시행령에서 해당 측정·평가결과를 통관절차의 간소화, 검사대상 선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금번 시행규칙 신설을 통하여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 과태료·과징금의 산정,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선박회사, 항공사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인 대상자의 요건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측정·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더하여, 일정수준(연간60만건)이상의 화물운송 주선실적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적하목록제출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였다.

판례로 알아보는 외환거래 ⑧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대법원 2007 두 19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I. 개요



□ 사실관계

① 원고 국내 용역제공자(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미국 시스템 권한자(B)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② 1996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사이에 국내에 있는 시스템 도입 업체(C)에게 (B)업체의 프로그램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③ 미국 (B)업체의 중앙결제계정(clearing bank account)을 통하여 미국 (B)업체에게 지급할 금액과 차감 정산하는 방법으로 미국 (B)업체로부터 위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¹⁾을 적용함.

□ 원고 측 주장 : 국내 용역제공자(A)

실제 외화획득이 된다면 용역 등을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한 경우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외화지

급 및 영세율 적용에 위법이 없다는 입장.

□ 피고 측 주장 : 세무서장

'외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불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하여야 한다는 입장.

II. 판결 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엄격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983년 이후 거듭되는 예규 및 1985년 이후 기본통칙 3-5-2...11(11-26-4)을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 주로 수출 등으로 국외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영(0)의 세율로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이 0원으로 계산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 전액 환급되는 완전 면세 기능이 있다.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고, 1989. 11.경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된다는 것은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기본통칙 11-26-3은 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거래가 외화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온 과세관행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 결론을 수긍한 사례

Ⅲ.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IV. 추가 견해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의하여 지정한 자에게 용역 등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해외의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례이다.

과거 기본통칙 및 과세관행에 따라 적용되어 다소 법리오해가 있던 사항이었으나, 이를 계기로 2009년 3월 26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관련 조항 신설 [현행 동 규칙 제22조]²⁾하여 용역공급 후 상계처리에 관한 영세율 적용 규정이 명확화 되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22 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신한 소식

신한관세법인
 대구경북지사 / 창원지사 OPEN

평소 신한관세법인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신 고객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신한관세법인이 대구경북지사와 창원지사를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한관세법인은 지난 50년간 쌓아온 KNOWHOW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신한관세법인 대구경북지사

- 지사장 : 권선아 관세사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97-3 파라디아 501 동 203 호
- 대표번호 : 054-716-1181

◎ 신한관세법인 창원지사

- 지사장 : 임숙미 관세사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7 덕산베스트텔 226 호
- 대표번호 : 055-716-0171



ABOUT WRITERS

COVER STORY -

인공지능과 우리 삶의 변화

FTA News -

한-미 FTA 발효 4주년, 이행 현황 및 시사점

Voices From The Fields -

반덤핑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II
 피해조사 방법(절차)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소식

판례로 알아보는 외환거래② -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신 중 호 관세사
j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지사
- 前 글로벌 자문 부문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자문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박 소 라 관세사
sr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前 인천공항지사
- 전자부품/화학약품 통관 전문
- 환급 컨설팅 전문



차 미 정 관세사
mjcha@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C/S팀
- 前 신한관세법인 서울본사 통관본부, 컨설팅본부
- 前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파견근무
- 원산지 관리사



박 병 관 관세사
bk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C/S 팀
- 前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前 무역상사 해외영업부 (2004-2012)
- 섬유/의류 통관 및 품목 분류 전문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원산지검증 자문 컨설팅



유 세 업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前 인천경기지사 (수출입통관/ 환급)
-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자문 컨설팅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